

202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



병무청

목차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 05

01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06

- 1-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2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10

- 2-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2-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2-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2-5 대학원장(지도교수)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3 출장·파견은 어떻게 가나요? 20

- 3-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3-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3-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04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28

-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 4-2 '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
- 4-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4-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36

- 5-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5-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42

- 6-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6-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07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46

- 7-1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7-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7-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목차

08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52

- 8-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8-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8-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09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8

- 9-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
- 9-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10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62

- 10-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10-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 10-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11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68

- 11-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 11-2**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

01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1-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 (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이라 함)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1-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연계대학원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

복무기간은 1-2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의 연구실)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

▶ 다만, '23년 1월1일 이후 편입자부터는 편입일 이후 2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됩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편입대상자 선발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매년 배정된 인원의 범위 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별도 선발전형(TEPS, 출신 대학원 성적, 3급 이상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취득)으로 선발하여 편입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원은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 중 선발하여 편입 →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 대상자 선발,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

02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2-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2-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2-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2-5 대학원장(지도교수)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대학원 (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대학원이라 함)에서 허가된 연구 분야와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근로시간 중 승인받은 업무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면 편입취소 및 고발되므로 대학원장(지도교수)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보충역 대체복무자로서 일반 박사학위과정 학생과 구별됩니다.

2-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할 수 있는 일

▶ 편입 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전공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전직, 파견, 출장, 국외여행 등으로 지정된 연구장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승인, 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2-2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 8시간

- 09시까지 해당 대학원의 승인받은 연구실/실험실에 출근하여 18시까지 허가받은 분야에 성실히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주 40시간 유연근무 가능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1일 복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무시간이 주 40시간에 모자란 경우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함
-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식 시간은 11:00~13:00 사이의 1시간, 석식 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

2-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업무

-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
- »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등 다른 업무
-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교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
 - ※ 근로시간 이후라도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은 엄격히 금지됨

개인 영리활동 금지

- »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4 처벌을 받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음

〈대학원장의 지시에 의거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가. 편입당시의 연구분야 외의 분야(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하면서 근무를 겸하여 시킨		연장 복무
	나.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 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 병역지정업체장 : 자연계대학원장, 과학기술원장

* 편입당시 해당분야 : 박사학위과정 연구분야

2-5 대학원장(지도교수)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 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 ❖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모든 매체 활용 가능

TIP

복무위반행위 신고화면 들어가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신청

실태조사관 신고조사

- ※ 보안유지 조사 →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방지
- ※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조사 결과처리

- ※ 실태조사 결과 업체(대학원장)가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 집니다.

2-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절차

» 전문연구요원이 권익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 ▶ 해당 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익침해사례 설명
- ▶ 권익보호상담관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부」를 관리하고,
- ▶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필요시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 ▶ 권익침해가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화해, 전직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함

병역의무자 사후 지원

» 고충상담을 신청한 자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권익보호상담관은 대면·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청별	전화번호	청 별	전화번호
서울 지방병무청	02)820-4563, 4411, 4425	충북 지방병무청	043)270-1352, 1311
부산·울산 지방병무청	051)667-5323, 5259, 5254, 5257	전북 지방병무청	063)281-3312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053)607-6313, 6282, 6284	경남 지방병무청	055)279-9314, 9256
경기·인천 지방병무청	031)240-7258, 7287, 7379	제주 지방병무청	064)720-3255, 3217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062)230-4315, 4254	인cheon 병무지청	032)454-2313, 228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042)250-4314, 4453, 4256	경북 병무지청	031)870-0810, 0253
강원 지방병무청	033)240-6309, 6255, 6266	강원영동 병무지청	033)649-4216



03

출장·파견은 갈 수 있나요?

- 3-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3-2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3-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의무복무 중 해당 연구분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입니다.
- 출장·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 될 수 있으니 대학원에서 출장·파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국내 파견근무(출장 포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과 파견근무 : 승인

-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

※ 3개월 미만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근무 : 신상변동 통보

-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 7일 이내 국내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에만 기재

- 대학원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

출장을 갈 수 있는 범위가 3-2 정해져 있습니다.

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

-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
-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

- ▶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

3-3 파견을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
-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연구소
- ▶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로의 파견
- ▶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

파견제한 사유

-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가 4촌 이내 혈족인 해당 업체로의 파견
-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그 해의 인원 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TIP

업무처리 사례

사례1) 전문연구요원이 출장(월~수), 사내 근무(목), 출장(금~목) 형태로 2주간에 걸쳐 출장을 간 경우

⇒ 일수계산 : ① 사내 근무(목)으로 인해 연속하지 않은 출장임.

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사내 근무 이전 출장(월~수)은 출장일수 합산 3일, 사내 근무 다음날부터의 출장(금~목)은 출장일수 합산 5일 (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복무기록표 기재**(출장을 2회(3일 출장, 5일 출장)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

⇒ 위반시 행정조치 : '시정'(6-가)

사례2) 전문연구요원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일수계산 :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4일),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2일)하여 6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복무기록표 기재**(토·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6일간 출장임, 복무기록표에 출장 1회 기재)

⇒ 위반시 행정조치 : ‘시정’(6-가)

사례3) 전문연구요원이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일수계산 :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5일),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5일)하여 10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신상변동통보**(10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위반시 행정조치 : ‘시정’(1-다)

사례4) 전문연구요원이 월~금 출장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는 사내로 출근했다가 다시 오후에서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 일수계산 : ① 둘째 주 월요일도 출장에 해당함.

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 일수 합산(5일),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5일), 그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5일)하여 15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신상변동통보**(15일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위반시 행정조치 : '주의'(1-다)

사례5-1)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일수계산 : ① 훈령 제32조제9항에 따라 10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월

②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12월 2일
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신상변동통보**(2월 10일(①+②)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위반시 행정조치 : '경고'(1-다)

사례5-2)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일수계산 : ① 훈령 제32조제10항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일

⇒ **신상변동통보**(토·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16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위반시 행정조치 : '주의'(1-다)

04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 4-2 '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
- 4-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4-4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 승인전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당연전직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영 제89조2항7호) 합니다.

- 당연전직·승인전직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승인전직은 14일)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업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당연전직)

-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 복무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 취소된 경우
- ▶ 복무중인 대학원이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승인전직)

- ▶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후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23년 1월 1일 이후 편입자부터는 제외

편입일 이후 2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됩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승인신청서 : 대학원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 제출

❖ 준비할 서류

- ▶ 전직 신청서, 채용동의서(1개월 이내 발행) 등 증빙자료
- ▶ 대학원장은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전직에 부동의 하는 경우 전직 의견서 첨부)

❖ 전직승인

-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 희망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상호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

4-2 '23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

학위취득 의무화

❖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

-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이 취소
-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병역법 제37조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
 - 이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
 - ▶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 ▶ 영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 ▶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적용대상

» '23.1.1. 편입자부터 적용

4-3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

▶ 당면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승인전직 시 대기기간은 14일
이내

▶ 최초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
(다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
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
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영 제89조2항7호) 합니다.)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

▶ 전직대기기간 6개월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취소

※ 전직하지 않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4-4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전문연구요원의 다른 병역지정 업체로의 전직('22.1.1.이후 편입자)
-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 ▶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및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 지정업체로의 전직
-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함에 따라 핵심 연구 과제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로서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 ▶ 병역지정업체장이 4촌 이내 혈족인 해당업체로의 전직
-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05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 5-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5-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 기간은 연장복무 해야 합니다.



5-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휴가

- » 「근로기준법」 규정 준용 또는 학칙 등에 따름
- » 「근로기준법」 또는 학칙 등에서 정한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기간은 연장복무

결근

- » 1일 기준 근로시간 : 8시간 적용
 - » 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 » 8일 미만 무단결근 시 무단결근 일수와 무단결근일의 5배수 연장복무
- ※ 학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지각, 조퇴

-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
- ※ 지각·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
- ※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추가하여 연장복무

병가

- ※ 통틀어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5-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이란?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대학원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재신체검사 가능함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지정병원 조회

구비서류

-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 병무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 ▶ 신체등급 5급 :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 ▶ 신체등급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 ▶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

06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 6-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6-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될 수 있습니다.



6-1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금지

»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불가

수학금지 위반처벌 : 편입 취소 또는 연장 복무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6-2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금지 예외

▶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07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 7-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7-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7-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이며 3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1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등

허가신청 및 기간

»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

»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1년

» 의무복무 인정기간 : 모두 합하여 3개월

* '15.7.1.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15.6.30. 이전 편입자는 종전규정 적용)

7-2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범위

»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 공동연구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연구기관
- 계약형태 : 공동연구 계약/협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공동연구계약서/협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 기술연수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기관
- 계약형태 : 기술도입 계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 도입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기술지도

- 계약당사자 : 국외 제품·기술수입기업, OEM 외국기업
-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제품수출 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인정요건

▶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 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개인부담은 복무 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개인소유는 복무 기간 불인정)

▶ 계약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연구요원과 국외연구소 직원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 기간 불인정)

7-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행정처분 대상(허가위반 사항)

- ❖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TIP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 병역사항: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
- 해당분야 : 연구·연수·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전공)분야와 관련성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 *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물 소유권 :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 *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공동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유효기간 확인
- 협약 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
 - * 전문연구요원과 교수등 개인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 및 고발

공동연구 계약서(견본)

① 연구과제	○○○○○○○○
② 연구내용	1.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와 한국○○○은 ○○라는 목적을 위하여 양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공동연구는 …………… 2. 연구프로젝트 기간 연구프로젝트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진행한다. 3. ……………
③ 경비부담	미국○○○와 한국○○○연구기관은 연구프로젝트와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은 ○○을 부담하고 한국○○○은 ○○을 부담한다.
④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미국○○○와 한국○○○ 연구기관은 이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
⑤ 병역지정 업체의 장	(서명), ○○○ 연구기관장 (서명)

※ 계약서 형식은 연구기관별로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복무 인정 심사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① ~ ⑤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복무인정 심사가 가능합니다.

08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 8-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8-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8-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 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사교육소집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 교육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8-1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_____

- ▶ 편입한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 ▶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일자 본인선택” 화면)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

- ▶ 전직대기 중인 경우(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 잔여
의무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가능)
- ▶ 국외근무중인 경우,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

-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 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 나.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 다.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등에서 기본군사훈련(15일)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
- ❖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8-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산업/승선 군사교육소집 일자/부대조회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질병, 심신장애, 주요업무 수행
-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 ※ 연기원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8-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료 처분)

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퇴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훈련 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 ▶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TIP

참고사항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이 취소 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 시킬 수 있으며 퇴영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합니다.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만료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기간 중 입게 된 부상·질병·또는 장애(군인사법에 의한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 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됩니다.

09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9-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
 - 9-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

-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 의무복무 기간 계산은 편입일자 부터 포함하며 의무 복무 중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됩니다.

의무복무기간 계산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산입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9-2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

- ▶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 기간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모두 합하여 3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 ▶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복무토록 결정된 기간
-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5배수 연장복무)
- ▶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 기타 결근기간 등

10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 10-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10-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 10-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해당 대학원의 해당 분야에서 연구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10-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취소사유

- ▶ 해당 대학원의 해당분야에서 연구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제적·중도포기 등 과정에서 제외된 경우
- ▶ 당연전직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이 취소되면 10-2 병역의무부와 됩니다.

의무부와

-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잔여 복무기간

- »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 계산 방법

- 현역병 입영 대상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참고사항

-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

복무단축 예외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

10-3 편입취소를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유보대상(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람

유보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

유보결과 처리

- 적법,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편입취소 후 병역의무부과
-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복직 또는 전직

TIP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편입취소

TIP

유의사항

- 화해의 경우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전문연구 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업체장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취하의 경우 : 취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원칙 단, 업체와 의무자가 합의하여 복직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당해 구제신청 소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11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1-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11-2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 「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이므로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동원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예비군 관련방침 상 동원예비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



11-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훈련대상 및 시간

(단위:시간)

구분			계	동원 훈련	동 원 미참자 훈 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예비 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4일 (32H) 또는 2박3일			128 (132)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160			8H	12H	140
	7~8년차		160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년차~연령정년		160					160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11-2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비군복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전화문의

국방부 : 국번없이 1577 - 9090

병무청 : 국번없이 1588 - 9090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홈페이지 : www.yebigun1.mil.kr

1.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훈련정보, 훈련신청/연기/보류/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1.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2. 동원훈련 관련 안내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산업지원업무 제도 상담 전화번호

청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07360	02)820-4492, 4494, 4496	02)820-4151
부산·울산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051)667-5238, 5257~9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41069	053)607-6256 6281~5	053)607-6250
경기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6440	031)240-7258, 7379,7281~4	031)240-7523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61489	062)230-4253~4, 4355	062)230-4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4944	042)250-4256	042)250-4127
강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6266	033)240-6260
충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8653	043)270-1351~2	043)270-1370
전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산3길 14	55033	063)281-3143, 3253	063)281-3300
경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51439	055)279-9254~6	055)279-9387
제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3219	064)720-3255, 3217	064)720-3260
인천 병무지청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4	032)454-2417
경기북부 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810	031)870-0358
강원영동 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병무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35208	042)481-2813, 2818	042)481-2819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근무 시에도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
거리 유지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
발생 확인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모임·여행
자제하기



코로나19 유증상 시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바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

.....

.....

.....

.....

.....

.....

.....

.....

.....

.....

.....

.....

.....

이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규정개정 등 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사이버 교육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병무민원 상담소 : **1588-9090**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www.mma.go.kr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work.mma.go.kr>

(복무관리포털 및 구인구직 시스템)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산업지원병역일터 | <http://work.mma.go.kr>